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9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이재관 · 김현정
박희승 · 차지호 · 양부남
안도걸 · 이언주 · 복기왕
김교홍 · 조인철 · 부승찬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합 설계 · 감리업체가 소방 설계 · 감리를 포함하여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,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사용승인을 위한 소방 감리에 대한 압박과 같은 불법 ·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.

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의 대형 리조트 화재 사고가 있으며, 현행 제도상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.

더불어 일괄 도급에 따른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적으로 소방 설계 · 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, 이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져,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.

이를 해결하기 위하여, 소방시설의 시공과 같이 건설, 전기 등 각종 공종 간 수평적 관계로 견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 설계·감리 분야에도 건설,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·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함.

이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,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, 소방 설계·감리업의 기술력,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,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1조 및 제37조).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본문 중 “소방시설공사”를 “소방시설의 설계, 시공 또는 감리(이하 “설계등”이라 한다)”로, “공사와”를 “설계등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공사와”를 “설계등과”로 한다.

제37조제4호의2 중 “소방시설공사를”을 “소방시설의 설계등을”로, “공사와”를 “설계등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) 제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(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)하는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용역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) ① (생 략) ② <u>소방시설공사</u> 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 다. 다만,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 종의 <u>공사와</u>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.	제21조(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소방시설의 설계, 시공 또는 감리(이하 “설계등”이라 한다)- --설계등과 ----- --. ----- ----- ---- 설계등과 ----- -----.</u>
제3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4. (생 략) 4의2.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 하여 <u>소방시설공사</u> 를 다른 업 종의 <u>공사와</u> 분리하여 도급하 지 아니한 자 5. ~ 7. (생 략)	제37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----- -- <u>소방시설의 설계등을</u> --- -- <u>설계등과</u> ----- ----- 5. ~ 7. (현행과 같음)